특약변경보고서

1. 약관명 :『 연금하나 통장 』특약

2 변경 시행일 : 2019년 3월 16일

3. 기 가입 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: 적용

4. 주요 변경 내용 : 기본금리 상시 제공

개정 전	개정 후	비 고
제1조 약관의 적용 ~ 제5조 이자지급 (생략)	제1조 약관의 적용 ~ 제5조 이자지급 (좌동)	
제6조 우대금리 적용 ① 이 예금에 원가일이 속한 달의 전월말일 또는 해지일 전월말일을 기준으로 과거 3개월동안 2개월이상 아래 연금이 입금되는 경우, 매일의 최종 잔액 중 1백만원 이하 구간에 대해서 매 영업일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 고시하는 우대금리를 적용하며, 1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제5조의 금리를 적용합니다.	**제6조 우대금리 적용** 이 예금에 원가일이 속한 달의 전월말일 또는 해지일 전월말일을 기준으로 과거 3개월동안 2개월이상 아래 연금이 입금되는 경우, 매일의 최종 잔액 중 1백만원 이하 구간에 대해서 연 1.4%의 우대금리를 제5조의 금리에 더하여 적용합니다.	**우대금리 명시**
1. 국민연금, 공무원연금, 군인연금, 사학연금, 기초(노령)연금, 보훈연금,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 2. KEB하나은행에서 가입한 개인연금 : 주택연금, 연금신탁, 연금보험, 연금펀드 3. 기타연금 : 고객이 지정한 연금수급일 전후 1영업일에 대량이체방식으로 건당 20만원이상 입금되고 적요에 '연금' 또는 '보험사명'이 기재된 자금	1. 국민연금, 공무원연금, 군인연금, 사학연금, 기초(노령)연금, 보훈연금,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 2. KEB하나은행에서 가입한 개인연금 : 주택연금, 연금신탁, 연금보험, 연금펀드 3. 기타연금 : 고객이 지정한 연금수급일 전후 1영업일에 대량이체방식으로 건당 20만원이상 입금되고 적요에 '연금' 또는 '보험사명'이 기재된 자금	**기본금리 상시적용**
② 우대금리를 적용한 금액 구간에 제5조의 금리는 추가 적용하지 않습니다.	② 삭제	
제7조 수수료우대서비스 ~ 제8조 상품전환 (생략)	제7조 수수료우대서비스 ~ 제8조 상품전환 (좌동)	